

[별표 2]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내용(제9조 관련)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2.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전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47조)
3.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4.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관련문서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제4항)  
다만, 당해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5. 지방세의 부과 관련자료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 가. 납세자가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 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다만, 당해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6.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공개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7.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 감염자에 관한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8. 기타 개별 법령에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전산·통신장비 운영관련사항 및 보안시스템 구성도, 보안컨설팅 결과 등 공개시 서구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충무계획, 보안시설,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보안업무와 관련된 비밀문서(대외비, I·II·III 비밀문서)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인감·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전염병 예방, 식품·보건·약사 등의 위생감시, 환경감시, 건축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3. 에이즈 감염자 관리, 정신질환자·재가 암환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 있는 정보
3. 수사의뢰 협조 중인 사항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 결과 처리관련 서류, 감사결과 문책 및 공무원 징계 의결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다만,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시험 관련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관리,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면접위원 명단, 채점관리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하는 정보. 다만,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규제 및 입찰 관련 정보〉

4. 단체지원(보조금, 사업비) 심사관련 심사위원 명단
5. 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결정통지에 관한 사항  
다만, 개별인·허가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결정통지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후 공개가능
6.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계획 등의 사항으로써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7.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주거공간의 설계도면,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및 건축물의 설계도 등 공개시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8.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나. 유자격자 명부 및 입찰예정자의 경영상태 평가서 등 입찰참가 법인·개인·단체 정보

〈인사 관련 정보〉

9. 인사평정·징계·상훈·승진 등 관련 심의·회의록 및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정보

다만, 인사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10. 공무원 등의 임면, 복무, 인사교류, 급여, 연금, 교육훈련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인사에 관한 조사 결과, 통계보고 결과 및 교육·연수 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11.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선정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가.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2. 진행중인 행정심판 관련자료 (답변서 등 증빙서류)

13. 서구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구 조직개편, 직제개편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결정전에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14. 공직자윤리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마. 회의시 단서 규정에 의해 비공개로 의결한 사항
15.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공무원의 연구실적 등)
16. 토지수용 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및 타인의 토지수용 재결 관련 정보 (재결서 및 감정평가서 등)
17.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 정보 (보상가액 및 보상 유무)
18. 기타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가.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나.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 다.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및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개인·법인의 토지거래내역, 부동산중개업자 등록현황(주민등록번호),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 과태료 등 부과 및 납부내역, 지방세과세증명서, 향측관독적출조서, 주민조회 등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2. 공무원 등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및 사업자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쓰레기 무단투기자 및 방치차량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
5. 수형사실,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신고 등 수형인명표 기재사항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및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3.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도시개발계획과 역세권 개발 등 도시개발계획 입안전의 관련 정보
2. 도시개발사업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 등
3. 용지매수계약서 등 공개시 투기목적이나 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정보